

학습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포스텍 학부생들의 학습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 함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학습설계, 사고력 증진 등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내 전문 센터 및 행정조직을 의미하며, 교육혁신센터가 프로그램 운영 총괄을 담당한다.

3. "환류"라 함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 및 점검, 모니터링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범위) 학습역량강화 지원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2.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등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3. 기타 대학이 제공하는 학부생의 학습능력강화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

제4조(기간 및 대상) 1. 학습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과 대상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부서별 프로그램의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2. 원칙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제5조(프로그램 평가 위원회) ① 학생의 학습능력강화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센터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1.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 및 정성적 실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습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운영부서는 수요조사 및 환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도입배경 및 목적

2. 프로그램의 특징,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3. 운영부서 협업 체계 및 소요예산
4. 성과평가 및 환류에 대한 계획

제7조(프로그램 성과관리) 운영부서는 프로그램 종료 시마다 운영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프로그램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 운영부서는 프로그램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및 자체평가를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며, 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한다.

제9조(환류) 운영부서는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운영부서는 운영결과보고서 등 환류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의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21. 02. 24